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6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성흠제, 홍성룡 의원 (2명)
찬 성 자 : 김희걸, 김기대, 김평남, 문장길, 강동길, 이현찬, 박순규, 이경선, 이병도, 이영실, 권영희, 이정인, 최 선, 최기찬, 송명화, 김제리, 김정환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함 (안 제34조제1항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9. ---------- ---------- ---100분의 30----------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조(감면)에서 다자녀 가구의 면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면서 세입 감소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중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 가구

나. 전제

○ 가구의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신청비율 증가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추정함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년간 **40억 8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8억 17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하수도료 감면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소계(a)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b-a)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분(안 제34조)

2. 세부추계내역

가. 감면대상 가구 전체 연간 하수도사용료 계산

구분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 기준			
	대상 가구수	가구 월평균 배출량	가구 월평균 사용료	연간 하수도사용료 총액
3자녀	85,264	29.3㎥	11,720원	11,991,528,960원
4자녀	6,616	35.2㎥	16,830원	1,336,167,360원
5자녀	745	41.1㎥	22,320원	199,540,800원
6자녀	149	47.0㎥	27,810원	49,724,280원
7자녀 이상	78	52.8㎥	34,570원	32,357,520원
합계	**92,852**			**13,609,318,920원**

주 : 연간 총액은 대상 가구수 × 가구 월평균 사용료 × 12개월임
자료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상·하수도사용료 비교표

('19년 3월 현재)

구 분	상수도 기본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기본요금 없음)						
	구경(mm)	요금(원)	사용구분(㎥)	단가(원/㎥)	사용구분(㎥)	'11	'12	'13	'14	'17	'18	'19
가정용	15	1,080	30까지	360	30까지	160	220	260	300	330	360	400
	20	3,000	31~50	550	31~50	380	510	610	700	770	850	930
	25	5,200										
	32	9,400	51이상	790	51이상	580	780	930	1,070	1,180	1,290	1,420

○ 자녀수별 가구당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계산

구분	감면대상 다자녀가구		가구당 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가구 월 평균 배출량	가구 월 평균 사용료	현행(20%) 감면 시	30% 감면 시
3자녀	29.3㎥	11,720원	28,120원	42,190원
4자녀	35.2㎥	16,830원	40,390원	60,580원
5자녀	41.1㎥	22,320원	53,560원	80,350원
6자녀	47.0㎥	27,810원	66,740원	100,110원
7자녀 이상	52.8㎥	34,570원	82,960원	124,450원

※ 비고 1. 월 배출량 중 1㎥ 미만의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계산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월 사용료 계산 후 십 원 미만은 절사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항 근거)

○ 감면비율별 현실적인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 예상액 추산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5년 합계
대상가구 중 신청비율		40% 신청	50% 신청	60% 신청	70% 신청	80% 신청	-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30% 감면	1,633,028	2,041,285	2,449,542	2,857,799	3,266,056	12,247,710
	현행(20%)	1,088,465	1,360,581	1,632,697	1,904,813	2,176,929	8,163,485
	확장분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 감면대상가구 중 신청비율은 감면비율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따라 1차~5차년도 매년 전년보다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18년 감면신청가구비율 약 20%, '19년 30%, '20년 40%, '21년 50%, '22년 60%, '23년 70%, '24년 80% 예상 시)

○ 다자녀 감면가구 및 감면액 통계(2017.1.1. 시행)

(단위: 천 원)

연도	근거 조항	감면대상(사유)	최초 감면시작일 (시행일 기준)	종료일	감면대상 (수용가) 수	감면액 (연간)
2017년도	제1항 제9호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1.1. ('17.1월 사용분부터)	적용 중	14,813 (가구수)	275,160
2018년도	제1항 제9호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1.1. ('17.1월 사용분부터)	적용 중	18,319 (가구수)	443,874